

# 대봉서한이다음 단지내 상가 공급(안)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입주(점)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에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복리시설공급)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청 제2022-건축주택과-분양신고-6호(2022.12.16)로 분양신고 수리처리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0-395번지 일원(대봉서한이다음)  
[ 대지면적 : 21,875.5㎡ / 건축물 연면적 : 91,681.3121㎡ /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공급규모 및 내역 : 근린생활시설 3개동 지하1층~지상1층 총 30개실 점포  
[ 근린생활시설 분양 총면적 : 3,394.2706㎡ ]
- 주차대수 : 21대(지하2층)
- 공급방법 : [단지내 상가] 점포별 내정가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
- 입점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점포별 공급내역

(단위 : ㎡, 원)

구분	동	층	호수	공급면적				대지지분	공급가격(내정가액)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근린 생활 시설	301동	1층	101호	26.2800	5.8416	11.9378	44.0594	12.0890	151,033,950	71,332,773	7,133,277	229,500,000		
			102호	29.1600	6.4818	13.2460	48.8878	13.4138	165,841,200	78,326,182	7,832,618	252,000,000		
			103호	29.1600	6.4818	13.2460	48.8878	13.4138	165,841,200	78,326,182	7,832,618	252,000,000		
			104호	29.1600	6.4818	13.2460	48.8878	13.4138	165,841,200	78,326,182	7,832,618	252,000,000		
			105호	29.1600	6.4818	13.2460	48.8878	13.4138	171,764,100	81,123,545	8,112,355	261,000,000		
			106호	30.2400	6.7219	13.7366	50.6985	13.9107	178,345,100	84,231,727	8,423,173	271,000,000		
			107호	30.2400	6.7219	13.7366	50.6985	13.9107	178,345,100	84,231,727	8,423,173	271,000,000		
		108호	19.4400	4.3212	8.8307	32.5919	8.9426	119,116,100	56,258,091	5,625,809	181,000,000			
		302동	1층	101호	56.2500	12.5035	25.5518	94.3053	25.8754	323,785,200	152,922,545	15,292,255	492,000,000	
				102호	53.7500	11.9478	24.4161	90.1139	24.7254	309,307,000	146,084,545	14,608,455	470,000,000	
				103호	51.9389	11.5452	23.5935	87.0775	23.8923	296,803,100	140,179,000	14,017,900	451,000,000	
				104호	47.1739	10.4860	21.4289	79.0888	21.7004	269,821,000	127,435,455	12,743,545	410,000,000	
		303동	지하	B101호	54.8100	12.1834	24.8976	91.8910	25.2131	388,279,000	183,382,727	18,338,273	590,000,000	
	B102호			94.5301	21.0125	42.9407	158.4833	43.4846	657,441,900	310,507,364	31,050,736	999,000,000		
	B103호			88.6025	19.6949	40.2480	148.5454	40.7579	623,878,800	294,655,636	29,465,564	948,000,000		

		B104호	106.7012	23.7180	48.4695	178.8886	49.0834	746,943,500	352,778,636	35,277,864	1,135,000,000	
		B105호	55.4625	12.3284	25.1940	92.9850	25.5132	412,299,650	194,727,591	19,472,759	626,500,000	
		B106호	63.2925	14.0689	28.7509	106.1123	29.1151	460,011,900	217,261,909	21,726,191	699,000,000	
		B107호	56.6350	12.5891	25.7267	94.9507	26.0526	420,525,900	198,612,818	19,861,282	639,000,000	
		B108호	58.7250	13.0536	26.6760	98.4547	27.0140	360,638,800	170,328,364	17,032,836	548,000,000	묶음 점포
		B109호	58.7250	13.0536	26.6760	98.4547	27.0140	360,638,800	170,328,364	17,032,836	548,000,000	
		B110호	81.2350	18.0572	36.9013	136.1936	37.3688	498,839,800	235,600,182	23,560,018	758,000,000	
		B111호	82.2585	18.2847	37.3663	137.9095	37.8396	296,145,000	139,868,182	13,986,818	450,000,000	
		B112호	34.8725	7.7516	15.8410	58.4651	16.0416	128,329,500	60,609,545	6,060,955	195,000,000	
	1층	101호	186.0150	41.3482	84.4980	311.8612	85.5684	654,151,400	308,953,273	30,895,327	994,000,000	
		102호	102.2463	22.7277	46.4458	171.4198	47.0341	363,929,300	171,882,455	17,188,245	553,000,000	
		103호	84.0500	18.6830	38.1801	140.9130	38.6637	299,435,500	141,422,273	14,142,227	455,000,000	
		104호	84.0500	18.6830	38.1801	140.9130	38.6637	299,435,500	141,422,273	14,142,227	455,000,000	
		105호	193.2850	42.9642	87.8005	324.0496	88.9128	683,107,800	322,629,273	32,262,927	1,038,000,000	
		106호	107.1225	23.8116	48.6608	179.5949	49.2772	379,723,700	179,342,091	17,934,209	577,000,000	
	계	30개실						10,529,600,000	4,973,090,910	497,309,090	16,000,000,000	

- 근생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상기 단지내 상가의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관련법규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가격임.
- **상가 호수별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률은 벽체 단열, 외부 마감재의 시공여부 등의 사유로 상이할 수 있음.**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정해진 점포순서대로 입찰 및 개찰이 진행되며 낙찰자 및 낙찰금액 발표 후 다음 점포 입찰을 진행함.
- 각 호실별 입찰순서, 진행방식 등은 입찰 당일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보증금은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야 함.
- 입찰신청서 작성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입찰신청서 및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금액은 점포당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백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함.(백만원 미만은 자동절사)
- 입찰금 기재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모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다를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함.
- 1인이 다수 점포에 입찰함에 제한이 없음.(단, 동일인이 같은 점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303동 B108호, B109호, B110호는 사업주체가 정한 묶음점포로 지정하여 분양하며, 각 점포별로 분할하여 청약 할수 없음.**
- **묶음 호실을 제외한 각 점포별 입찰보증금은 오백만원(₩5,000,000원)으로 하고, 묶음 호실(묶여진 각 호실 수)은 입찰보증금 천오백만원(₩15,000,000원)으로 입찰 전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무통장입금 후 입찰신청 구비서류(입금증)등을 지참하여 입찰 장소에 방문하여야 함.(입찰보증금은 현장 수납 불가)**
- 입찰은 해당시간까지 입찰 참가 신청 후 교부받은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 하여야 함. (마감일시 이후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점포별로 사업주체 내정가격(VAT 포함)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입찰가의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에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표기 금액을 우선함)
- 공급공고상 내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시 내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동일금액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공개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입찰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변경할 수 없음.
- 입찰 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이오니, 입찰 희망금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낙찰자 발표시 점포별 최고가 입찰자만 공개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공급회사에 귀속되며 해당 점포는 사업주체에서 공급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함.
-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은 무효되고 계약은 해제되며, 낙찰금액 총액의 10%는 사업주체에 귀속됨.

## ■ 상가시설용도

용도	사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의 대상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점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의 공공업무 수행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b>*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b>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것) 다. 서점(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라. 체력단련장, 당구장, 에어로빅장(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바.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금융업소(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동물병원 아. 다중생활시설 등(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자. 제조업소, 수리점 등(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b> (단, 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에 해당되는 용도는 제외)

- 상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점포별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하여야 함.
- 상기 이용시설기준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항목별 이용 가능 용도 및 허가면적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2. 공급일정 및 장소

### ■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기간	구비서류	장소
신청금 입금	2022.12.23.(금)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보증금 : 점포당 5백만원  <b>* 묶음 점포의 경우 1천5백만원</b></li> <li>입금계좌번호 : 대구은행 504-10-429321-6, 예금주 : ㈜하나자산신탁</li> <li>- 현장에서는 별도로 수납하지 않으니 입금하시고 무통장입금표를 접수시 소지하시기 바람.</li> <li>- 입찰보증금은 입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li> </ul>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18  서한이다음 건물주택

신청접수	2022. 12. 23. (금) (13:0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장 / 주민등록증 (단,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li> <li>• 입찰참가 신청서(사업주체 소정양식)</li> <li>• 환불용 통장 사본 1부</li> <li>•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인감날인 및 (위임인 본인 발급분)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li> </ul> ※ 신청접수 시 2022. 12. 23. 12:00시 이전 입금된 입찰보증금만 유효 ※ 14:00시 이후 입찰장소 입장 불가.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14시 이전 입장자에 한하여 연장 접수.
입찰	2022. 12. 23. (금) (14: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보증금 예치증(입찰함 투입용)</li> <li>• 입찰서(사업주체 소정양식)</li> <li>• 신청서 도장</li> </ul>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입찰행사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장에서 별도 공지 예정.
계약	2022. 12. 23. (금) (15: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보증금 예치증(계약용)</li> <li>• 계약금(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지참)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li> <li>•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계약용)</li> <li>• 주민등록등본1통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위임인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추가 지참</li> </ul>
유찰자 환불	2022. 12. 30. (금) 이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환불 예정</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입찰 신청접수 및 입찰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배우자 포함)

### ■ 입찰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법인에 한하며, 입찰 참가 신청 접수자에 한해 입찰참여가 가능함.
- 낙찰자 선정은 사업주체 내정가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추첨방식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입찰금액이 사업주체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함.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대금의 일부로 대체함.
- 낙찰자는 상기 계약일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유찰)이고 입찰보증금은 공급자에 귀속됨.
- **유찰 또는 낙찰 무효시 사업주체에서 공급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수익계약으로 진행함.**
-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 공급금액 및 납부시기 및 방법

구 분	계약금 (10%)	중도금(40%)				잔금(50%)
		1차(2023-04-20)	2차(2023-09-20)	3차(2024-02-20)	4차(2024-07-22)	
납부일자	계약시	1차(2023-04-20)	2차(2023-09-20)	3차(2024-02-20)	4차(2024-07-22)	입점지정일(2024. 10월 예정)
납부금액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10%	낙찰금액의 50%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고, 단지내 상가 낙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 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구은행	504-10-429321-6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예금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의무 알선사항 아님)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타금융기관 미적용)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고,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입점 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고,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임.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 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증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름.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3. 기타 유의사항

■ 상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에 관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바랍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8,000,000,000-	제 01292022-101-0013900 호

1.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아파트 사업"의 분양대금채권(일반분양 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2. 분양자(매도인)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3.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토지신탁 안내**

본 건축물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시공사 “(주)서한” 및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송안” 간에 2021년 09월 29일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써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1.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송안,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주)서한, 대출금융 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2.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송안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함.

3.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송안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

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송안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송안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4.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송안과 시공사인 (주)서한에 있음을 확인함.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6.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함.
7.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 유의사항

- 1)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 환산방법 : 호실별 면적(m<sup>2</sup>)×0.3025]
- 2) 각 호실별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3) **입찰 신청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4) 계약 체결 후 계약자 자신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제3조에 따라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함.
- 5)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계약금 및 공급대금으로 처리됨.
- 6)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일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예: 공인중개사사무소, 담배영업권취득 등)은 유의하시기 바람, 입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영업허가 가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7)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홍보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되는 각종시설(도로망 등의 기반시설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설계변경에 따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물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급금액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정산처리 할 예정임. 단 소수점이하 공급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함.
  - 본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별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기타시설 설치 등으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면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이유로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호실별 평면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별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호실별로 내부 칸막이 벽체가 경량벽이며 계약전 반드시 관련 도면이나, 상담을 통해 숙지한 후 계약하고 추후 이에 관련한 행위 제반에 대해서는 “갑”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상가 2개 호실 확장에 따른 칸막이 해체 시 바닥 및 천장 등은 보수불가)



- 각 점포의 전기용량은 점포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감소는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 전기요금은 상가별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며, 상가 계약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상가 배수배관은 PVC 배관이므로 화학약품이나 고온수를 사용하는 업종(세탁소 등)은 입점전 "갑"과 협의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 비용과 관련 의무 교육비용 등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소방안전대상건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배치에 따른 비용이 상가 관리비에 부담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카달로그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에서 제시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 분양계약자의 개별동의 없이 동품질 및 등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카달로그 및 기타 홍보물상 이미지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재질, 유리두께 등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 및 안전성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8)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총 21대로 지하 2층에 설치되고, 차량출입구는 303동 근린생활시설 좌측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차량출입구와 별도로 사용됨.
- 9) 지상 1층에 위치한 주차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장으로써,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음.
- 10) 신청자는 공급공고,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11)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공급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12)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간판, 캐노피, 기타추가시설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각 점포의 경우 분할 시 출입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용도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13) 각 점포의 전기용량은 점포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감소는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 14) 전기요금은 상가별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며, 상가 계약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15) 난방 및 취사를 위한 기본 가스배관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상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함
- 16) 학원, 교습소 등의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각종 등록,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17)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 시 및 입점후의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 18) 계약자들은 입점 전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점 후 상가의 제반관리를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화재보험 계약 및 방화관리자 선임은 계약자(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가 직접하여야 함.
- 19) 입점자는 상가 간판 설치 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상가캐노피 돌출부) 또는 허가관청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입점자 상호간의 분쟁에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고 관여하지 않음.
- 20) 상가와 인접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함.
- 21) 301동,302동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는 점포 옥상에 설치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22) 303동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는 지하1층, 1층에 위치한 지정된 실외기실에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
- 23)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 관청에게 문의하여야 함.
- 24) 단지출입구는 주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므로 단지 내 상가 배치를 확인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25) 입점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함.
- 26)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7) 상가의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 외부마감 등은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8)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29) 공용부 화장실의 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가의 공용부분(화장실, 복도, 청소도구함 등)은 계약자가 공동으로 자체 관리하여야 함.

- 30) 각 호실(점포)별 바닥마감 레벨과 보도블럭 레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인 출입 등을 위한 설비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신 후 입찰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람.
- 31) 부가가치세 환급용도의 세금계산서(사업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금납부전에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납부 이후 사업자등록 하시는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개인)를 대금납부 이후 사업자로의 변경 발행은 불가함.
- 32) 입점지정기간 이후 또는 키볼출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은 입점자가 부담(명의이전 포함)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33) 입점지정일 최초일 전 또는 공급대금 전액 납부 전에는 해당 점포의 일체의 사용(수선, 인테리어, 현수막부착)이 불가함.
- 34) **상가 전면 인도블록의 경우 관할청의 인허가 사항 또는 안전상 문제로 인해 안전 난간대 또는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향후 불편사항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5)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
- 36)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37) **303동 근린생활시설 B104호 내부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므로, 공간활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38) **각 상가 내부에 급수계량기(계량기 이후 캡마감)는상가 내부에 임의로 설치되고, 노출되므로 공간 활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39) 근린생활시설 303동의 경우 천정형 에어컨 배관만 설치됨. (실내기, 실외기 설치 제외)
- 40) 근린생활시설 301동, 302동의 경우 천정형 에어컨 배관 설치되지 않음 (실내기, 실외기 설치 제외)
- 41) 각 상가의 수도계량기는 원격검침이 아닌 개별검침으로 진행됨.
- 42) **303동 근린생활시설의 호실별 위치에 따라 실외기 설치위치와의 거리 차이로 추후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냉난방 설비의 냉난방 효율과 대기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므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44)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과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45) 기타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각 호실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청소도구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음.
  - 상가는 입점 전까지 당사에서 공사(현장사무실 등)와 당사의 영업(분양사무실 등)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상가의 옥상 배수처리를 위한 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가와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303동의 우편물보관함은 복도에 설치되며, 301동과 302동은 우편물보관함이 설치되지 않음.
  - 환기시설설비는 설치되지 않음.
  - 301동 103호와 302동 101호의 외부 후면에는 지붕과 연결되는 점검용사다리가 설치되며, 추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0111-1714818
시행위탁자	(주)송안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55, 4층(신천동, 청구빌딩)	170111-0757312

시공사	(주)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170111-0023002
-----	-------	-------------------	----------------

■ 모델하우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18 서한이다음 건본주택

■ 분양문의 : 053-322-4700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상가 공급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